

오픈 스토어프런트(Open Storefronts) 자주 묻는 질문

v. 10/28/2020

1. 누가 오픈 스토어프런트에 신청할 수 있습니까?

주로 대중에게 직접 상품을 판매하는 1 층 가두 매장 사업장. 소매업에 종사하는 사업장(예: 의류 및 장비 매장, 소매 식품 매장, 건강 및 개인 관리 매장) 이외에 수리점, 개인 관리 서비스 및 드라이클리닝과 세탁 서비스도 좌석, 대기열 또는 건조 상품 진열 용도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"1 층 가두 매장" 사업장은 거리에서 직접 접근할 수 있고 매장 정면이 보도 쪽인 사업장을 말합니다.

2.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에서 허용되는/허용되지 않는 행위는 무엇입니까?

- [오픈 스트리트: 레스토랑\(Open Streets: Restaurants\)](#)의 일환으로 임시 표지를 설치하고(예: A-프레임), 상품을 전시하고, 거래를 완료하고, 좌석과 로프/지지대를 설치하고, 판촉 활동을 수행하고, 적합한 보도 구역과 차도 구역에 접이식 우산과 텐트를 설치할 수 있음
- 야외 구역에 히터를 설치할 수 없음
- 야외 판매가 금지된 품목(예: 주류, 시가/담배/전자 담배, 의약품, 성인용 콘텐츠)을 제외한 건조 상품만을 야외에서 판매할 수 있음
- 개인 서비스(예: 머리 깎기, 미용)는 야외에서 할 수 없음
- 사업장에서 실내 판매 면허를 이미 받았거나 판매하는데 새 면허를 받을 필요가 없는 상품에 한해 야외에서 판매할 수 있음
- 상품 전시 및 판매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허가와 규정을 준수해야 함
- 고객이 구매한 상품에 대해 야외에서 드롭오프 또는 픽업은 허용됨
- 앰프를 이용한 사운드는 금지됨
- 허가된 레스토랑을 제외한 다른 사업장의 전방 보도 또는 차도 이용(무료 또는 기타)은 허용되지 않음
- 허용되는 행위는 2020 년 10 월 30 일부터 12 월 31 일까지 지속할 수 있음
- [DSNY 눈 경보\(Snow Alert\)](#)가 발령 중일 때는 모든 야외 행위를 중단해야 함

3. 어떤 보도와 거리에서 허용됩니까?

8 피트보다 넓은 모든 뉴욕시 보도는 대지 구획에 맞춰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[오픈 스트리트: 레스토랑](#)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거리는 대지 구획에 맞춰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언제부터 업소는 야외 보도 공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?

사업 운영을 위해 공공 보도를 추가로 사용하길 원하는 업소는 nyc.gov/openstorefronts에서 온라인 양식을 제출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(10 월 30 일 또는 그 이후)

5. 내 사업장은 지하에 위치하고 있지만 거리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합니다. 오픈 스토어프런트에 참여할 수 있습니까?

상황에 따라 다릅니다. 해당 사업장이 대중을 대상으로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에 종사하고 있고, 매장의 입구가 거리에서 직접 접근이 가능하고, 귀하의 사업장만이 사업장 정면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(예: 다른 가두 매장과 공유하지 않음), 고객이 매장에 들어가기 위해 계단을 내려가야 하더라도 귀하는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 모든 대지 구획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
6. 사업장 영업이 끝났을 때 보도에 자재를 보관하고 고정할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영업이 끝났을 때 모든 물건과 자재는 실내로 가져와야 합니다. 화분이나 벤치와 같은 물건은 기존 규정에 따라 밖에 둘 수 있습니다(예: 사업장의 벽에 붙이거나 최대한 가까이에 둘 것).

7. 내 사업장에는 기존 가판대가 있습니다. 계속 사용해도 됩니까?

예. 기존 가판대(Stoop Line Stand) 면허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은 가판대 면허 발행 조건에 따라 계속해서 가판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가판대는 해체할 필요가 없으며 사업장의 영업이 끝난 뒤에도 그 자리에 둘 수 있습니다.

8. 내 사업장 옆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. 거기에 내 자재를 두거나 상품을 전시할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사업장은 해당 사업장 바로 앞의 보도만 사용할 수 있으며 매장의 너비를 벗어나서 확장할 수 없습니다.

9. 오픈 스토어프런트에 차도 가장자리 주차 차선을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까?

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은 차도 사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사업장이 지정된 [오픈 스트리트: 레스토랑](#) 구역에 위치한 경우, 사업장은 오픈 스트리트: 레스토랑 프로그램의 시간 동안 보도 또는 차도를 이용할 수 있는 옵션이 있습니다.

10. 오픈 스토어프런트에 신청비가 있습니까?

시는 이 프로그램 신청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.

11. 보험에 들어야 합니까?

시는 적절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 중개인과 협의할 것을 권장합니다.

12. 일일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?

오픈 스토어프런트 운영 시간:

- 월요일-토요일: 오전 8시-밤 11시
- 일요일: 오전 10시-밤 11시

하지만 사업장은 영업 시간 동안만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13. 내 사업장은 허용된 오픈 스토어프런트 운영 시간보다 더 일찍 열거나 또는 더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엽니다. 내 사업장이 열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야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?

사업장은 사업장의 영업 시간 동안만 보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의 영업 시간이 오픈 스토어프런트에서 허용된 시간보다 더 빠르거나 늦은 경우, 야외 사용은 허용된 시간까지 종료해야 합니다. 오픈 스토어프런트 운영 시간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밤 11시까지,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입니다.

예를 들면 사업장이 일요일 9시에 문을 여는 경우, 10시부터 야외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사업장이 밤 10시에 문을 닫는 경우, 영업 종료 시점에 보도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

16. 내 사업장은 주의 COVID 클러스터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문을 닫았습니다. 오픈 스토어프런트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영업할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귀하의 사업장이 비필수 업종인 경우 영업할 수 없습니다. 필수 사업장은 오픈 스토어프런트에 계속 참여할 수 있습니다. 사업장은 [뉴욕주](#) 및 [DOHMH](#) 에서 정한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.

17. 오픈 스토어프런트 프로그램은 언제까지 운영됩니까?

허용된 행위에 대한 보도 사용은 2020 년 12 월 31 일까지 지속됩니다.

18. 내 업소의 정면 보도에 자전거 보관대 또는 Citi Bike 정거장 같은 구조물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?

시는 거리 설치물을 제거하거나 이전하지 않습니다. 업소는 또한 자신의 사업장 앞 보도에 이미 설치된 시 재산을 제거할 수 없습니다. 업소가 이를 제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19. 내 사업장 앞의 보도에 조명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?

예. 조명은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지 않아야 하고 NYC Fire Department 불꽃 및 기타 소방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.

20. 아주 넓은 보도에서 8 피트(8') 보행자 경로가 확보되면 보도 양쪽에 상품이나 자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매장 정면을 따라 대지 경계선에서 최대 5 피트까지 보도 공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8 피트(8')는 보행자 경로의 최소 요건입니다.

21. '편의시설 구역(Amenity Zone)'의 도로경계에 인접한 보도에 상품이나 자재를 설치할 수 있습니까?

아니요. 자재가 대지 경계선에서 5 피트 내에 있고 도로경계까지 8 피트 너비의 흰히 트인 경로가 유지되는 경우 물건과 상품은 건물 정면에 직접 인접하게만 허용됩니다.

22. 내 1 층 사업장은 코너에 있거나 L 자 모양의 매장처럼 정면이 두 곳입니다. 오픈 스토어프런트 신청 시 야외 소매 치수의 총길이(피트)* 및 총너비(피트)를 어떻게 표시합니까?

두 측면의 길이를 더하면 총 길이(피트)가 됩니다*. 너비는 양 측면에서 동일해야 하므로 총너비(피트)에 답하려면 해당 피트를 이용하세요.

23. 나는 이미 야외 소매 공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. 신청해야 합니까?

NYC DOT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야외 소매 공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앞마당, 옆마당, 뒷마당 또는 안마당과 같이 개인이 소유한 야외 공간
- 개인 주차장